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후위기특위·청년특위 상설화〉

- 허 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58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82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31호)

2024.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안)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안)	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안)	5
II . 검토의견	6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치(허영·김소희·박지혜의원안)	6
2. 청년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 설치(허영의원안)	15

I. 제안경위·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 영 · 박지혜 · 이소영 · 박성준 · 주철현 · 전재수
한민수 · 허종식 · 복기왕 · 김남희 · 위성곤 · 소병훈
이연희 · 박희승 · 고민정 · 박민규 · 노종면 · 민형배
정준호 · 박지원 · 한정애 · 김성희 · 박해철 · 백승아
의원 (24인)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5

※ 의안번호 : 85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후 문제가 우리의 일상에는 물론,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임.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

른 청년 고용 및 실업, 주거 등 청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임.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정해지고,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제외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회의원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소희 · 한지아 · 우재준 · 백종현 · 최은석 · 김종양
최보운 · 이상휘 · 김용태 · 김위상 · 김상훈 · 장동혁
인요한 · 권영세 · 강선영 · 곽규택 · 이종욱 · 김대식
김 건 · 김성원 · 박준태 · 박정훈 · 신동욱 · 조승환
조지연 · 박수민 · 고동진 · 유용원 · 김형동 · 최수진
박덕흠 · 김선교 · 이양수 · 정희용 · 안철수 · 강대식
강명구 · 임이자 · 강민국 · 이인선 · 조경태 · 안상훈
김상욱 · 조정훈 · 정성국 · 주진우 · 박성훈 · 서범수
김예지 · 이현승 · 임종득 · 이종배 · 서지영 · 강승규
나경원 의원(55인)

2) 제 안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 의안번호 : 238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하지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타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 · 민병덕 · 김문수 · 김성환 · 이소영 · 김승원
전진숙 · 임미애 · 김 윤 · 강준현 · 서영교 · 오세희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8. 8

3) 회 부 일 : 2024. 8. 9

※ 의안번호 : 26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 · 산업 ·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 ·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 ·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치(허영의원안·김소회의원안·박지혜의원안)

개정안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임.

3건의 개정안은 ① 위원회의 명칭, ② 심사 대상 법률안 및 예·결산의 범위, ③ 위원 구성기준, ④ 시행일 등의 측면에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2년을 임기로 하는 18명의 위원으로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안 및 예·결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허영의원안 (2024.6.24)	김소회의원안 (2024.7.30.)	박지혜의원안 (2024.8.8.)
명 칭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심사 권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예산안 및 결산 예비심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 심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심사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결산 예비심사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결산 예비심사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건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안건

구 분	허영의원안 (2024.6.24)	김소회의원안 (2024.7.30.)	박지혜의원안 (2024.8.8.)
	※ 소관사항 심사 시 §81·§84에 따른 소관 상임위로 봄	—	※ 소관사항 심사 시 §81·§84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로 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타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제시 할 수 있고 소관위는 그 의견을 존중	
위원 선임 임기	18명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원내 모든 정당 참여 원칙,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을 포함하여 의장이 선임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2년	(명문의 규정 없음)	2년
위원장	· 특위 위원 중 임시의장 선거의 예1)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 임기와 동일		
비고	· 특위 활동기간 관련 조문(§44②·③) 비적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공포한 날	공포 후 3개월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허영의원안	김소회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신설>	제45조의2(기후위기특별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 1.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제45조의2(기후위기특별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둔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제46조의4(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둔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1)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현행	허영의원안	김소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u>관련된 법률안의 심사</u> 2. <u>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u> 3. <u>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u>	<u>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u> 2. <u>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u> 3. <u>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u>	<u>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u> 2.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다)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u> 3. <u>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u>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 ③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	②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제1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 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교

현행	허영의원안	김소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u>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u>	<u>존중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u>	<u>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u>
	<u>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④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선임한다.</u>	<u>④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u>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u>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현행	허영의원안	김소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⑧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⑧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산업화 이후 가속화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오늘날 각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 있음.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2년

12월 8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²⁾를 구성하였으나, 동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인 활동기간과 입법권 및 예산심의권의 미비로 인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부 정책 및 재정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시적·연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설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임.

현행 「국회법」상 설치된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5조)가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는 그 업무가 영속적이고 정부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성되는 특정 상임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현재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2) 제21대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은 아래 표에서와 같음.

구성일	위원선임일	위원정수	활동기간	법안심사권
2022.12.8.	2023.2.7	18명	2022.12.8. ~ 2024.5.29. (23.11.30. 활동기간연장)	없음

·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소관하고 있으나,

에너지 세제 개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다양한 제도가 여러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제한되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로 운영할지 또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용할지 여부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의 상시적 관리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심사권한의 부여와 관련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등 심사 대상 안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존에 소관하고 있던 상임위원회와의 권한 충돌이 문제되거나 소관의 판단 및 안건 회부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심사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심사 대상 안건의 범위를 설정하고 법률안 등의 명칭

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결산 예비심사로 규정하고 있는 김소희의원안과 박지혜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³⁾.

셋째, 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허영의원안 및 박지혜의원안은 18명의 위원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김소희의원안은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경우도 상임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선임의 예와 같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원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위기특별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넷째, 시행일 등 부칙과 관련하여, 허영의원안·박지혜의원안은 개정안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김소희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실질적인 위

3) 허영의원안은 기후위기특위에 대하여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및 예산안·결산’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그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김소희의원안 및 박지혜의원안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소관 법률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그 심사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원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기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3건의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상임위원⁴⁾ 및 상임위원장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일 또는 전임자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 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위원장 선거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기한을 특례의 형식으로 부칙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5) 제41조(상임위원장)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2. 청년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 설치(허영의원안)

개정안은 국회에 청년 고용·주거,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려는 것임.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45조의3(청년특별위원회) ① 청년 문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u>청년특별위원회</u>를 둔다. 1. <u>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u> 2. <u>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와 관련된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u> 3. 그 밖에 <u>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u>의 심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u>청년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u> ③ <u>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u> ④ <u>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⑤ <u>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 ⑥ <u>청년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⑦ <u>청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u> ⑧ <u>청년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최근 세계적 경기 둔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청년실업 및 청년주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관련하여 국회는 청년일자리 확대 등 청년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9일 「청년미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⁶⁾,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권한이 미비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에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안 및 예산안·결산 등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정부 각 부처의 청년정책 및 관련 재정사업을 통합적으로 점검·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설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상 설치된 상설특별위원회는 제45조7)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일함. 예산결산특

6) 제20대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은 아래 표에서와 같음.

구성일	위원선임일	위원정수	활동기간	법안심사권
2017.11.9	2017.12.5	18명	2017.11.9. ~ 2018.5.29.	없음

7)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는 그 업무가 영속적이고 정부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성되는 특정 상임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청년고용·주거,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관련 사항은 「청년기본법」(정무위원회 소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및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등과 그 밖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표-4] 청년정책 관련 주요법률 및 소관상임위원회 현황

법률명	주무부처	소관상임위원회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정무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률명에 “청년” 이 포함된 법률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청년정책 관련 제도·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안건심사의 연속성 및 현행의 소관주의를 존중하여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서 담당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임.

둘째, 심사권한의 부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청년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농어업인 및 청년정책 등 청년 문제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예산안·결산의 예비심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별 안건이 청년문제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여 「국회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전담 소관사항과 중복·경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소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